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 용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062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1일

발 의 자 : 유 용 의원(1명)

찬 성 자 : 송재형, 오경환, 우창윤, 김동윤,  
박기열, 김기대, 유찬중, 유 청,  
남창진, 신건택, 우형찬 의원  
(11명)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지원신청서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규칙이 미제정된 상태이므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으로”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u>규칙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 ----- ----- -- 「<u>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서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